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09.2.5(목) 16:00 이후		
배포일시	2009.2.5(목) 13:30	담당부서	국고국 국유재산과
담당과장	정병기(2150-5150)	담당자	김재중 사무관(2150-5155)

제목 : 200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(안) 수립

□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계획인 「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(안)」이 2009.2.5(목)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,

○ 향후 국무회의 심의(2009.2.10.)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

□ 국유재산관리계획(안)은 “국유재산 관리·처분기준”과 각 관리청이 제출하고 총괄청(기획재정부)이 종합·조정한 “재산명세의 총계”로 구성되며

○ 주요내용은 첨부와 같음.

<첨부> 「200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(안)」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[첨부]

200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(안) 주요내용

1. 개요

-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의 관리(취득, 관리환, 무상대부) 및 처분(매각, 교환, 양여, 신탁)에 관한 계획(「국유재산법」 제12조)이며,
 - 「국유재산관리·처분기준」 및 「관리·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명세의 총계」 두 가지로 구성
-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관리청의 건의·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리·처분기준을 일부개정하고
 - 각 관리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·처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·조정하고, 국유재산명세의 총계를 확정

2. 주요내용

□ 「국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 주요 개정사항

- 주한미군기지가 새로이 평택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,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재산(공여해제반환재산)의 매각대금을 ‘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’의 세입으로 하여 이전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

<2009 국유재산관리·처분기준(안)>

제10조(특별회계 소관 재산 등의 매각기준)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매각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.

4. 그 매각대금을 국방·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, 등기특별회계,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

- 국가 이외의 자와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, 현재는 대상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만 교환을 허용하고 있으나
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,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을 위하여 산림청 소관 토지 중 불요존국유림(不要存國有林)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

<2009 국유재산관리·처분기준(안)>

제12조(교환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인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 (다만, 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미만인 때를 말하며,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)에는 교환하지 못한다.

* 동 법령에서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목적 등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2분의 1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

□ 국유재산 관리·처분대상 재산명세 주요내용

- 계상기관 : 17개 관리청, 12개 시·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
 - 신청 : 총 5,433건
 - 조정 : 승인 4,648건, 불승인 785건
- 조정기준
 - 국유재산법령 및 「국유재산 관리·처분기준」 등에 부합 여부

○ 관리·처분 재산규모

- 취득 : 11,505천㎡, 1조 5,406억원 상당
- 처분 : 1,617천㎡, 1,657억원 상당
- 관리환* : 2,472천㎡, 300억원 상당
 - *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각 관리청(중앙관서)으로 이관
- 무상대부 : 71천㎡, 48억원 상당

<참고> 관리·처분 재산의 규모

(단위 : 천㎡, 억원)

구 분	토지		건물		기타** (금액)	계	
	면적	금액	면적	금액		면적	금액
- 취득(A)***	11,227	3,705	278	3,582	8,119	11,505	15,406
- 처분(B)***	1,548	1,313	69	325	19	1,617	1,657
중감(A-B)	9,679	2,392	209	3,257	8,100	9,888	13,749
- 관리환*	2,472	300	-	-	-	2,472	300
- 무상대부*	71	48	-	-	-	71	48

*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

** 기타 : 토지·건물 이외의 재산(공작물, 기계·기구, 전세권 등)

*** 취득 : 매입, 교환(취득), 기부채납, 처분 : 매각, 교환(처분), 양여